제 2 8 5 회 정 례 회 보건복지위원회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: 445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송정빈

(더불어민주당, 동대문1, 환경수자원위원회)

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송정빈 의원입니다.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최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시장이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다만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 차원의 실제적지원이 수요대비 저조한 상황입니다.
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과 복지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본 개정안에 명 시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